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공갈)·주민등록법위반·전자금융거 래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감금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반(집단·흉기등폭행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폭행



)·강요·점유이탈물횡령

[부산지방법원 2014. 9. 19. 2014고단154,2014고단45(병합)]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장성훈, 문지선(기소), 유시동(공판)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손정우 외 1인

【주문】

1

1.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처한다.

압수된 망치 1개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.

2. 피고인 2를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.

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[이유]

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